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2158 보험금

원고, 항소인 0100 (46△△△△-1△△△△△△△)

광주 북구 00동 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김윤용, 공익법무관 이용주, 김재현,
방지형

피고, 피항소인 00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00동 00

대표이사 김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조동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6가합10592 판결

변 론 종 결 2008. 7. 9.

판 결 선 고 2008.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_____

판사 양영희 _____

판사 손진홍 _____